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가단1014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석

변 론 종 결 2021. 12. 7.

판 결 선 고 2022. 1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23,834,2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23,834,2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성립과 양도

- 1) D 주식회사는 2013. 10. 7. C에게 1,500만 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6.5%, 대출기간 만료일 2018. 10. 7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- 2) C가 2016. 1. 7.부터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자, D 주식회사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2571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C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게 16,321,243원 및 그중 14,963,304원에 대하여 2016. 4. 7.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위 법원의 2016. 5. 16.자 지급명령이 2016. 4. 25. C에게 송달되어 2016. 5. 10. 확정되었다.
- 3) D 주식회사는 2016. 12. 9. E 주식회사에, E 주식회사는 2018. 10. 26.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(이하 '이 사건 양수금채권'이라 한다)을 각 양도하고, 각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- 4) 2021. 1. 8.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미변제 원리금은 원금 13,716,360원, 이자 및 연체이자 10,117,895원 합계 23,834,255원이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

- 1) C는 2015. 8. 13. F 주식회사(후에 명칭이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. 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와 사이에,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C, 수탁자 소외 회사, 1순위 우선수익자 H조합, 2순위 우선수익자 I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소외 회사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- 2) C는 2020. 2. 4.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0,000,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'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7. C 앞으로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, 서울서부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21211호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

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3)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,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2. 7. 접수 제21212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31,000,000원,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,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21213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140,000,000원, 존속기간 2020. 2. 7.부터 2022. 2. 6.까지, 전세권자 C인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매매 당시 C의 재산 상태

이 사건 매매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, ① 가액 168,411,000원(=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50,000,000원 - 우선수익권자 H조합의 원리금채권 181,589,000원) 상당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(이하 '이 사건 수익권'이라 한다), ② 가액 합계 33,009,346원 상당의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29157㎡, L 임야 18248㎡, M 임야 1983㎡ 중 각 1/13 지분이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는,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금 19,798,000원, ② N에 대한 채무금 504,000원, ③ O에 대한 채무금 6,152,000원, ④ P에 대한 채무금 16,835,000원, ⑤ Q에 대한 채무금 4,535,000원, ⑥ R에 대한 채무금 3,703,000원, ⑦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금 23,834,255원(2021. 1. 8. 기준 원리금,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은 모두 원금 기준이다)이 있었으며, 소극재산의 합계는 75,361,255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 내지 25호증(이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S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그 채무자인 C는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익권이 소멸하게 하였고, 그로 인하여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후 C가 자력을 회복하여 현재

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C는 2020. 2. 7.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40,000,000원, 존속기간 2020. 2. 7.부터 2022. 2. 6.까지로 하는 전세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전세금 140,000,000원을 지급하였고,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T 임야 3필지 중 각 C 소유 지분은 2021. 9.경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C의 적극재산은 위 전세금반환채권 140,000,000원이고, 소극재산은 75,361,255원으로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. 즉,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168,411,000원 상당의 이 사건 수익권이 소멸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라 초래되었으나, 그 후 C가 매매대금 중 일부인 140,000,000원을 전세금으로 지급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었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① 위 전세금은 일시적인 견금과 같이 U와 피고, C 사이에 순차적으로 오고 갔을 뿐 U에게 반환되어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, 피고가 위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도 없으므로, 이를 C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고, ②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원금의 2배를 훨씬 초과하고,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도 원금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연체이자를 고려하면 원금액 51,527,000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므로,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.그러나 ① 피고가 C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②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지연이자를 고려하면 원금액보다 증가할 것임을 추인할 수는 있으나, C의 전세금반환채권액과 위 채권들의 원금액의 차이를 고려하면 위 채권들의 지연이자율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재은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특별시 은평구 아파트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은평구

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13층 아파트

1층 497.98㎡,

2층 내지 10층 각 485.02㎡,

11층 내지 20층 각 267.08㎡,

지하1층 1211.95㎡, 지하2층 1961.06㎡, 지하3층 1965.99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 4764.9㎡

(권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84.92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4764.9분의 42.6989 끝.

